**Capital Call** **약정서**

- 전 문 –

1.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투자자”)는 한화자산운용㈜ (이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한화 미국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55213DF7107, 이하 “이 건 투자신탁”) 의 수익자이다. “투자자”가 이 약정서 체결일 현재 이 건 투자신탁에 투자할 금액은 총 KRW [•]이고, 이 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지분 비율은 별표 1 투자 지분 비율과 같다(이하 “이 건 지분율”).

2. 이 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자산운용사”는 이 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Aberdeen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LP (“AGIP I”)의 지분에 투자하고, 이를 일정 기간 운용하는 방법으로 이 건 투자신탁을 운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환위험 및 금리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스왑은행”)과 ISDA 2002 MASTER AGREEMENT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에 근거한 통화스왑거래 또는 통화선도거래(이하 “통화스왑/선도거래”)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통화스왑계약 또는 통화선도계약 (이하 “통화스왑/선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3.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수탁은행”)는 이 건 투자신탁의 자산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로서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을 보관, 처분, 관리하여야 하는바, 전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스왑은행”과 사이에 기본계약서에 근거한 통화스왑/선도거래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통화스왑/선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 “투자자”, “자산운용사”, “수탁은행” 및 “스왑은행”은 본 통화스왑/선도계약과 관련한 이 건 투자신탁의 자금부족에 대비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 [•]월 [•]일 이 약정서(이하 “이 약정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자금 부족에 대한 “자산운용사” 의 통지 의무)**

“자산운용사”가 이 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이 건 투자신탁(또는 그 신탁회사)이 본 통화스왑/선도계약 상의 채무(계약의 해지 또는 기한 전 거래 종료 시 이 건 투자신탁이 지급하여야 할 최종청산잔액 등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와 “수탁은행”에게 해당 사유의 발생경위, 해당 채무액(이하 “자금 부족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사”은 “투자자”에 대하여 위 통지서를 송부하는 동시에 해당 통지서를 “스왑은행”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제2조 (“자산운용사”** **또는 “스왑은행”** **의 추가 투자 요청)**

제1조의 통지와 동시에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아래 제3조에서 정한 추가 투자를 요청(Capital Call)한다. 단, “자산운용사”의 추가 투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스왑은행”은 “투자자”에게 직접 추가 투자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자”의 이 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 투자)**

“자산운용사” 또는 “스왑은행”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투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자금 부족액 중 이 건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건 투자신탁에 추가로 투자한다.

**제4조 (추가 투자금의 사용 제한)**

1. “자산운용사”와 “수탁은행”은 제3조에서 정한 “투자자”의 추가 투자를 포함하여 이 건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산운용사”’와 “수탁은행”은 “투자자”를 포함하여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로부터 추가 투자 받은 이 건 투자신탁의 자금을 본 통화스왑/선도계약 상 이 건 투자신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이 약정서의 효력)**

1. 기본계약서, 통화스왑/선도거래 확인서 및 이 약정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이 건 통화스왑/선도계약에 관하여는 이 약정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수익자인 “투자자”가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 (이하 “해당 투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약정서의 계약당사자인 “자산운용사”,”스왑은행”에게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스왑은행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DB생명보험
   2. DB손해보험
   3. 건설근로자공제회
   4. 경찰공제회
   5. 공무원연금공단
   6. 과학기술인공제회
   7. 교보생명보험
   8. 국민연금공단
   9. 군인공제회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 농협손해보험
   12. 농협은행
   1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4. 동양생명보험
   1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6.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7. 미래에셋생명보험
   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9. 삼성생명보험
   20. 삼성화재해상보험
   21. 새마을금고중앙회
   22. 서울보증보험
   2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4.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5. 아이비케이연금보험
   26. 아이엔지생명보험
   27.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28. 우정사업본부
   29. 케이디비생명보험
   30. 케이비생명보험
   31. 케이비손해보험
   32. 코리안리재보험
   33. 하나생명보험
   34. 한국교직원공제회
   35. 한국증권금융
   3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7. 한화생명보험
   38. 한화손해보험
   39. 흥국생명보험
   40. 흥국화재해상보험
3. 본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해당 투자 지분을 새로운 양수자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양수자가 Capital Call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양도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추가 투자 의무 기타 이 약정서상의 일체의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는 새로운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새로운 투자자의 이 건 지분율은 투자계약서에 따른 지분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 약정서는 약관 또는 계약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기존의 “투자자”, “자산운용사” 및 “수탁은행” 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의 어떠한 합의 또는 약정에도 우선하며, 그러한 기존의 합의 또는 약정의 내용과 이 약정서의 내용 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기존의 합의 또는 약정은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 약정서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투자자”, “자산운용사” 는 그 상대방을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합의 또는 약정을 이유로 이 약정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

**제6조 (진술 및 보장)**

“투자자”, “자산운용사”, “수탁은행”, “스왑은행”은 이 약정서 약정일 현재 각자 다음의 각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함을 보증한다.

1.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약정서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결의, 기타정관 등 내부 규정상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한다.

**제7조 (손해배상)**

투자자는 제3조에서 정한 추가투자 의무를 미이행 하는 경우 통화스왑/선도계약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 “수탁은행” 및 “스왑은행”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8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정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약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아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 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투자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 미국 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 1호 의 “투자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대표이사 최 철 웅 (인)

**“자산운용사”**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한화 미국 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 1호 의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대표이사 한 두 희 (인)

**“수탁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한화 미국 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 1호 의 “수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은행장 권 준 학 (인)

**“스왑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한화 미국 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 1호 “스왑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

은행장 진 옥 동

위 지배인 김 상 근 (인)

**별표 1** **투자금액 및 투자지분비율**

|  |  |  |
| --- | --- | --- |
| **투자자** | **KRW 투자금액** | **투자지분비율** |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 KRW [•] | 약 [•]% |
| 이 건 투자신탁 | KRW 35,400,000,000 | 100% |